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2. 23 선고 2021가단122825(본소), 2021가단130581(반소)

판결 [매매대금 · 장비보관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

담당변호사 박상수

피고(반소원고) 1. 주식회사 B

피 고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제

변 론 종 결 2022. 11. 11.

판 결 선 고 2022. 12. 2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는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 D는 피고(반소원고)와 연대하여 위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16,6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021. 11. 1.부터 에어커팅기계2대를 반출하는 날까지 월 33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휴대폰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휴대폰 등에 사용되는 유리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9. 9. 30. 별지 목록 매각 설비 리스트 기재 각 기계(이하 '이 사건 매각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별지 목록 보관 설비 리스트 기재 각 기계(이하 '이 사건

보관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보관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 및 보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 및 피고 회사 사업장의 임대인인 피고 D는 이 사건 매매 및 보관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고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다. 이 사건 매매 및 보관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계·설비 매매/보관 계약서

제4조[보증금]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계약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 등의 보상에 충당하기 위해 피고 회사 대표이사 피고 C 개인보증을 특약사항에서 정한다.

제5조[매도가격]

① 매각가액은 별지 표시 목록 설비 전체1) 에 대하여 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고, 원고에

게 피고는 6개월 할부로 매월 30일 10,000,000원씩 지급한다.

② 매각대금 할부 완납 시설비 명의 이전 완료한다.

제7조[보관된 설비]

① 피고는 매각된 설비와 별도로 여분의 에어컨팅기 2세트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2019. 12.까지 특별한 비용 없이 보관한다.

특약사항: 피고 회사는 본 계약서 제4조 제①항의 계약사항을 미이행 시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건물주 E 대표이사 피고 D의 보증서를 제출한다.

양도인 원고

양수인 피고 회사

보증인 피고 D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 및 보관계약에서 정한 최종 매매대금 지급 기일인 2020. 3. 30.까지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수회 잔금 지급의 유예를 요청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21. 5.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보관기계의 보관비용 및 수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면서 위 보관기계를 회수해 갈 것을 요청하였다.

마. 피고는 2021. 3. 2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행각서

2021. 10. 30.까지 설비대금 잔금 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잔금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원고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도 일반 및 민,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이며 조치 사항 업무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조치사항:

1. 설비 잔금 40,000,000원 2021. 4.부터 매월 10,000,000씩 매월 30일 지급한다.
2. 설비 보관 월임대료, 월폐수 처리비용, 장비 수리비용, 설비 보관비용 관련하여 전혀 이의제기하지 않는다(설비 이동 시 기타 부대비용도 요구하지 않고 적극 협조한다).
5. 원고 샌딩기 설비 2대 이동 후 설비에 가동 시 아무 문제없어야 한다(샌딩기 2대 피고 회사에서 개발용으로 사용하였다).

채무자 피고 회사

채권자 원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10호증, 을 제1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각기계의 매매대금으로

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가 위 매매대금 중

3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마지막 지급기일인 2021. 7. 31.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1.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는 이 사건 매매 및 보관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1.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 및 보관계약에서 정한 보관 기간이 도과한 후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보관기계를 피고 회사 공장용지에 보관함으로 인하여 2020. 1. 1.부터 2021. 6. 30.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12,420,000원(= 기계 면적 상당 월 임차료 690,000원 × 18개월)을 얻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보관기계를 회수하지 아니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보관기계 이동을 위한 분해비용 2,400,000원, 이 사건 보관기계 운반비용 858,000원(= 크레인 비용 440,000원 + 지게차 비용 198,000원 + 5톤 화물차량 비용 220,000원), 2021. 8.부터 10.까지 보관료 990,0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부당이득으로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지출하거나 부담한 비용의 합계인 16,66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채권으로 원고의 매매대금 채권을 상계한다.

2) 판단

을 제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은 액수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은 비용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이행각서에 의하면 ‘설비 보관 월임대료, 월폐수 처리비용, 장비 수리비용, 설비 보관비용 관련하여 전혀 이의제기하지 않는다(설비 이동 시 기타 부대비용도 요구하지 않고 적극 협조한다)’라고 정하였는바, 피고 회사가 구하는 부당이득은 이 사건 보관기계의 임대료 및 설비 이동 시 기타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자동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 회사의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관기계를 보관하고, 원고를 대신하여 위 보관기계를 이전함으로써 인하여 원고는 위 2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16,668,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관기계의 보관료로 매월 330,000원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부당이득으로 16,668,000원 및 2021. 11. 1.부터 이 사건 보관기계 반출일까지 매월 3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관기계의 임대료 및 설비 이동 시 소요되는 기타 비용의 지급을 구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반하는 피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수진

별지

1) 위 계약서의 ‘별지 표시 목록 설비 전체’는 이 사건 별지 목록 각 리스트 기계 전체를 말함